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7년 6월 13일
- 나.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13일
- 라. 상정일자 :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7.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개범위(안 제4조)
- 공개 방법 및 내용(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 안 제3조에는 비용의 공개원칙과 공개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공개해야 할 비용기준과,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을 별표로 정하는 등 공개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공개방법과 공개해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운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공공시설물 공개 범위 중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 하한금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향후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의 체계적인 방법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 부분을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며,
- 안 제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설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7. 6. 21.

제안자 : 강복희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공공시설물 공개 범위 중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 하한금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향후 공공시설물의 설치, 관리의 체계적인 방법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 부분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며,
- 안 제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 부칙 조항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백만원”으로 하며,
- 안 제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u>50만원</u> 이상인 경우</p> <p>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p> <p>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p> <p>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4조(공개 범위) ① (제정안과 같음)</p> <p>1. ----- -- <u>1백만원</u> -----</p> <p>2. ----- -----</p> <p>② ~ ⑤ (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u>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u>2018년 1월 1일</u>부터 -----.</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
----------	-----

발의년월일: 2017년 6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다. 공개범위(안 제4조)
- 라. 공개 방법 및 내용(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국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 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 ·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시설물